

(가칭)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02. 1. 29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1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85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2002. 1. 29)
상정, 심사, 원안채택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상기 구역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며 상하수 기능등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주거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주변 신규아파트단지【대흥주택재개발아파트단지(태영아파트), 용강제1구역 주택재개발구역(신축공사중)】와 부조화 등으로 불량한 주거환경이 조성된 지역으로, 대상구역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2/3이상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동의하는등 주민의 다수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어 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변의 연계성 도모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을 위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①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 ② 면 적 : 19,790㎡ (건교부 74.00㎡, 마포구 1,174.00㎡, 사유지 18,542.00㎡)
- ③ 건물동수 : 106동 (유허가 106동)
- ④ 가 구 수 : 284가구 (가옥주 167가구, 세입자 117가구)
- ⑤ 추진경위
 - 2000. 9. 25 : 구역지정요청
 - 2001. 3. 2 : 관계부서 협의 (서울시 문화재과외 12개부서)
 - 2001. 11. 19 : 구역지정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01.11.19 ~ 2001.12.03
 - 신문게재 : 전국매일, 매일경제신문
 - 공람결과 : 의견제출 없음

다. 입안내용

①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19,790㎡	

② 공공시설계획

◎ 도로

결구명	규 모				기 능	사 용 형 태	연 장 (M)	위 치		비 고
	노 형	세분류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면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14	용강동 323	용강동 437-2	◎ 일부구간 선형변경 - 기점:용강동 310-1 - 종점:용강동 278-1 - 연장:149M
신설	소로	3	2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0	용강동 182	용강동 256-14	-
신설	소로	3	3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	용강동 313-4	용강동 313-3	-

◎ 면적시설

개발 구분	규모		위치	면적 (㎡)	비고
	명칭	번호			
신설	녹지	1	용강동 278-3번지일대	727.0	◎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근거 세대당 2㎡이상 녹지확보 - 분양 : 702㎡이상 - 임대 : 82㎡이상
신설	녹지	2	용강동 315-2번지일대	83.0	

③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계획

개발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위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용강제 2 구역	19,790	택지	18,418	용강동 285 일대	106				106	-

◎ 건축시설계획

개발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용강제 2구역	19,790	택지(1)	16,916	용강동 285일대	공동주택(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4.9 이하	50.0이하 15층	
			택지(2)	1,008	용강동 285일대	공동주택(임대)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4.9 이하	50.0이하 15층	
			택지(3)	129	용강동 285일대	근린상가	건축법등 관련법규에 따 름			
			택지(4)	365	용강동 285일대	종교시설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 축법 및 관련법규적용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85㎡)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80%이상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40%이상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35㎡ 이하 · 임대주택 : 전용면적 35㎡ 이하 							
임대주택을건설 하지않는 경우 그 사유			-							
건축시설의건축 선에 관한 계획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본 건은 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1999.3.31 법률5956호)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당해 구역은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재개발 사업지로 동측 방향으로는 마포로와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연계되고, 남측 방면으로는 마포대교와 강변북로, 서북측으로는 용강제1재개발사업 구역 및 대흥재개발아파트단지(태영아파트) 등과 근접해 있는 지역임.
대상지내는 4m이상 소방도로가 전무하여 화재 및 재난시 구조 등이 어렵고 도시가스, 하수시설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 놀이터 등이 없어 생활 만족도가 극히 낮은 곳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며 대상 구역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2/3이상인 주택 재개발구역지정에 동의 하는 등 주민의 다수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음.
- 사업계획중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의 설치·정비계획을 보면 사업지 주변 주택지와 접한 일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근거, 세대당 2㎡이상의 녹지를 확보하여 소음차단 효과 및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고, 건축시설계획중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국민주택(85㎡)건설 비율의 경우 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40%이상)으로 건립하고 전용면적 35㎡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 종전의 도시재개발사업은 주택의 물량적 공급에 의한 고밀도 개발로 인해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는 물론 새로운 교통과 환경문제 등을 야기하여 왔으나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특히 동 사업지는 인근에 태영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용강제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용강제3, 제4주택 재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바, 공덕동과 도화동 등 근린생활권 전역을 재개발 영향권으로 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차원에서 인구, 교통, 환경, 재해의 영향과 도로공원등 공공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 : 용강동사무소 부근의 주민들도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추가 지정이 가능함.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 : 용강동사무소 및 용강파출소등 공공시설이 구역에 포함되는가 ?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공공시설을 사업지구내로 포함 할 시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질의요지(김순금 위원) : 공덕제4구역 내 공공시설(동사무소)은 처음에는 사업지구내 포함이 안되었으나 추가로 포함되지 않았는가 ?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사업지내 공공시설을 포함할시에는 주민들에게 용적율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추가지정이 가능함.
- 질의요지(김순금 위원) : 공공시설등을 포함한 가설계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검토하겠음.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 : 사업구간내 문화재(정구중가)는 포함이 되는가 ?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포함이 되지 않음.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진입 도로등을 먼저 개설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여야 하나 아파트를 먼저 신축후 도로를 개설하여 민원이 많음.

또한 사업구역 지정시 사업장이 굴곡이 있음. 앞으로 사업을 추진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할 것.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채택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의안 번호	
----------	--

(가칭)용강제2주택제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2002. 1. .

마 포 구 청 장

목 차

1. 사업계획(안)
2. 위치도
3. 지적도
4. 전경사진
5. 사업계획 결정도 (지적도면)
6. 사업계획 결정도 (현황도면)
7. 토지이용현황도
8. 경과년수별 현황도면
9. 건축개요
10. 건물배치도

(가칭)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	--

2002. 1. .

마 포 구 청 장

1. 전 명 : (가칭)용강제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사업계획)안

2. 제안이유

상기 구역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며 상하수 기능등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주거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주변 신규아파트단지【대흥 주택재개발아파트단지(태영아파트), 용강제1구역 주택재개발구역(신축공사중)】와 부조화 등으로 불량한 주거환경이 조성된 지역으로, 대상구역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2/3이상 이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동의하는등 주민의 다수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어 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변의 연계성 도모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을 위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구역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 면 적 : 19,790㎡ (건교부 74.00㎡, 마포구 1,174.00㎡, 사유지 18,542.00㎡)
- 건물동수 : 106동 (유허가 106동)
- 가 구 수 : 284가구 (가옥주 167가구, 세입자 117가구)
- 추진경위
 - 2000. 9. 25 : 구역지정요청
 - 2001. 3. 2 : 관계부서 협의 (서울시 문화재과외 12개부서)
 - 2001. 11. 19 : 구역지정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01.11.19 ~ 2001.12.03
 - 신문계재 : 전국매일, 매일경제신문
 - 공람결과 : 의견제출 없음

4. 입안내용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나.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19,790㎡	

다. 공공시설계획

● 도로

결정구분	규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M)	위치		비고
	노형	세분류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일반도로	214	용강동 323	용강동 437-2	● 일부구간 선형변경 - 기점:용강동 310-1 - 종점:용강동 278-1 - 연장:149M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일반도로	50	용강동 182	용강동 256-14	-
신설	소로	3	3	4	국지도로	일반도로	15	용강동 313-4	용강동 313-3	-

● 면적시설

결정구분	규모		위치	면적(㎡)	비고
	명칭	번호			
신설	녹지	1	용강동 278-3번지일대	727.0	●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근거 세대당 2㎡이상 녹지확보 - 분양 : 702㎡이상 - 임대 : 82㎡이상
신설	녹지	2	용강동 315-2번지일대	83.0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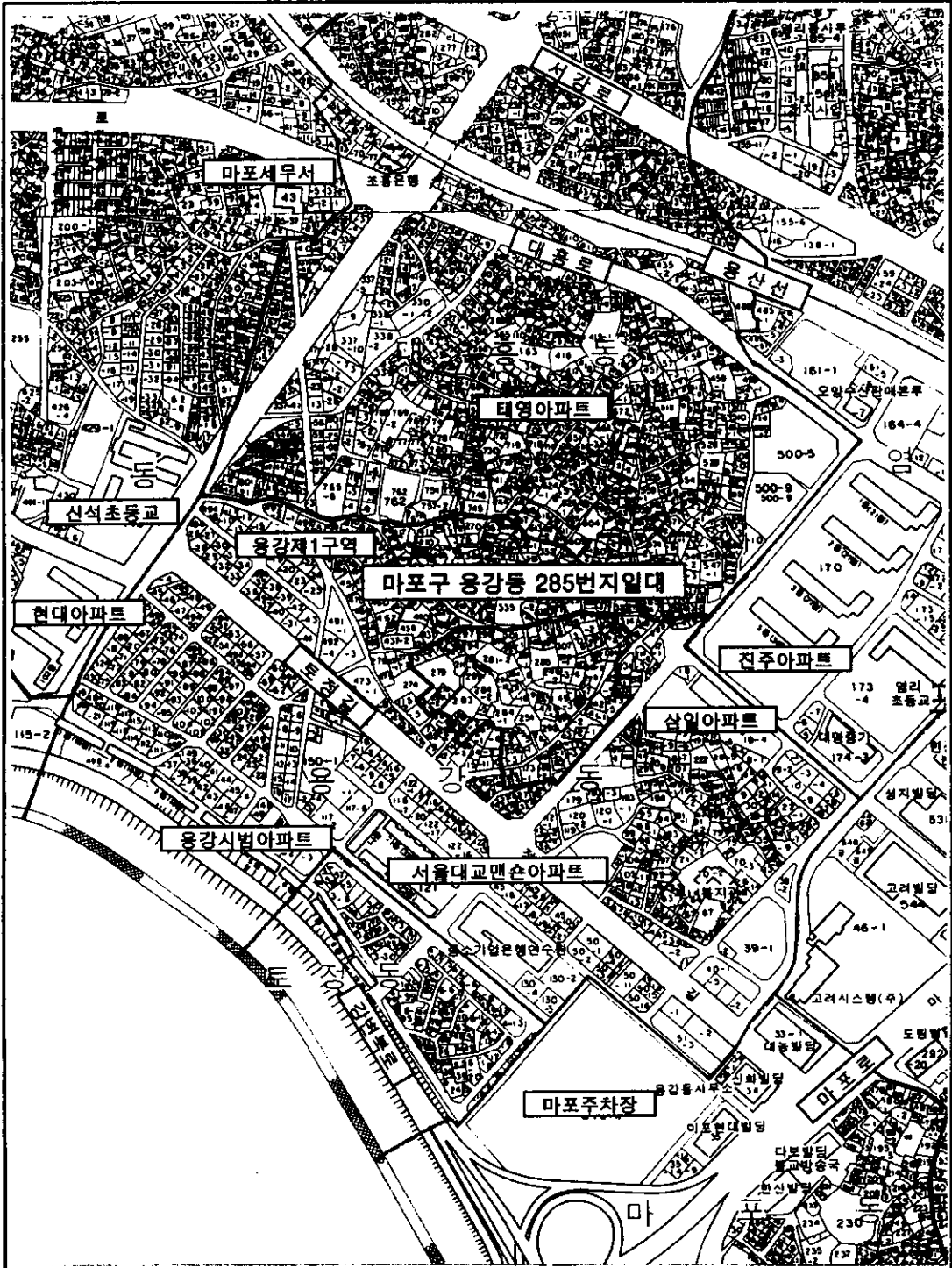
● 기존건축물의 정비계획

결정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위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규	용강제2구역	19,790	택지	18,418	용강동 285 일대	106				106	-

● 건축시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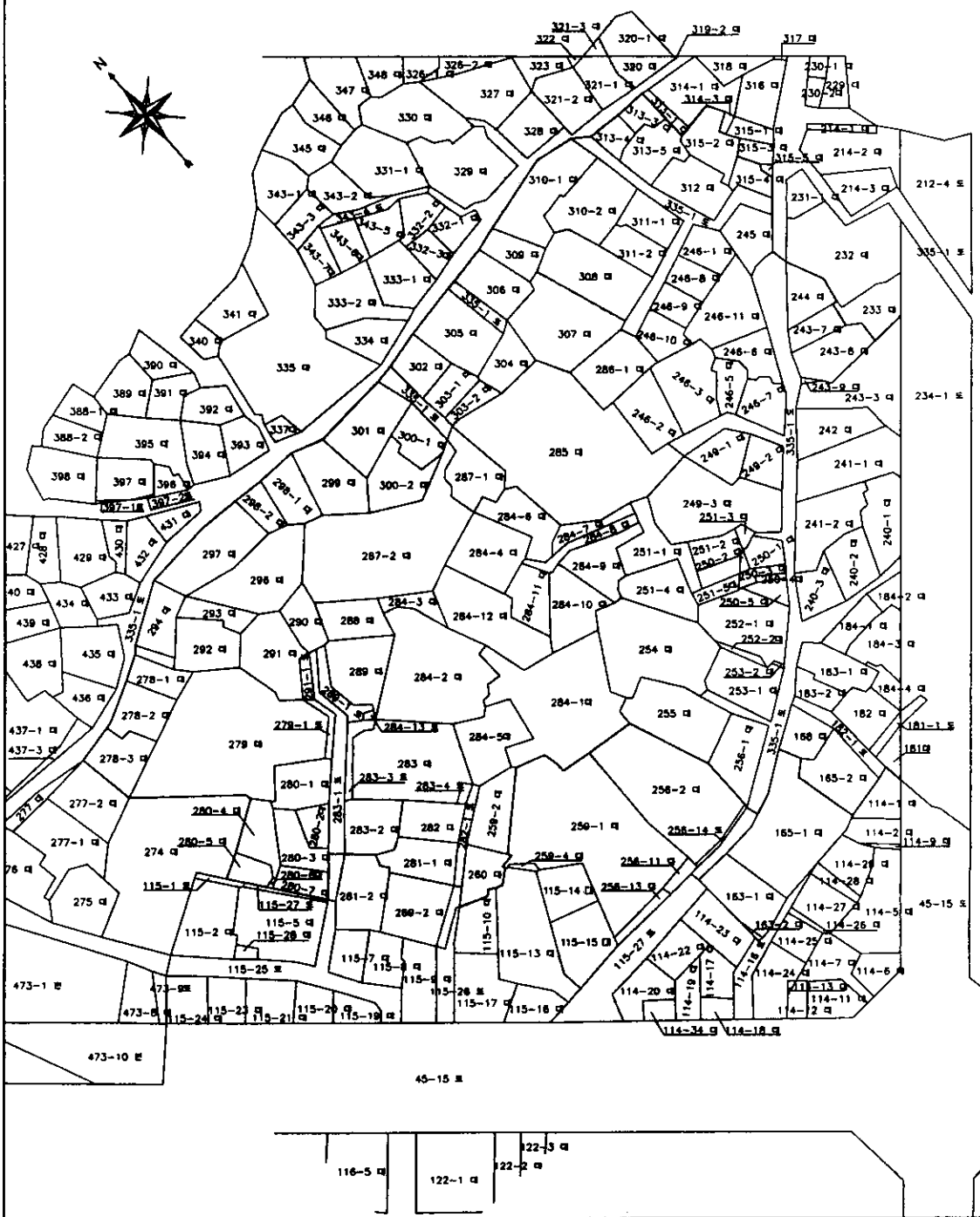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용강계 2구역	19,790	택지(1)	16,916	용강동 285일대	공동주택(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4.9 이하	50.0이하 15층	
			택지(2)	1,008	용강동 285일대	공동주택(임대)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4.9 이하	50.0이하 15층	
			택지(3)	129	용강동 285일대	근린상가	건축법등 관련법규에 따름			
			택지(4)	365	용강동 285일대	종교시설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축 법 및 관련법규적용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85㎡)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80%이상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40%이상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35㎡ 이하 • 임대주택 : 전용면적 35㎡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마. 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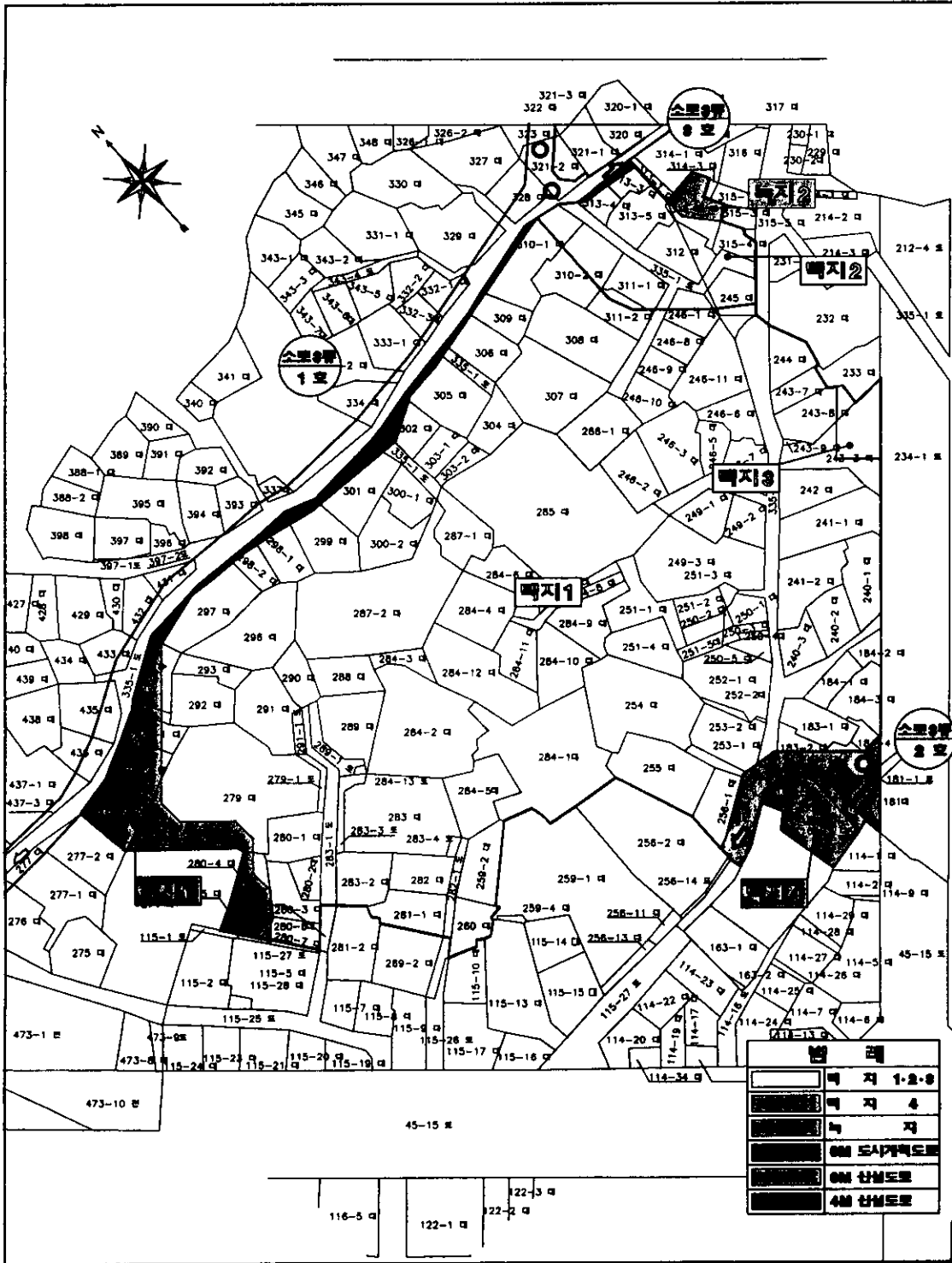
위 치 도

축척 : 1 /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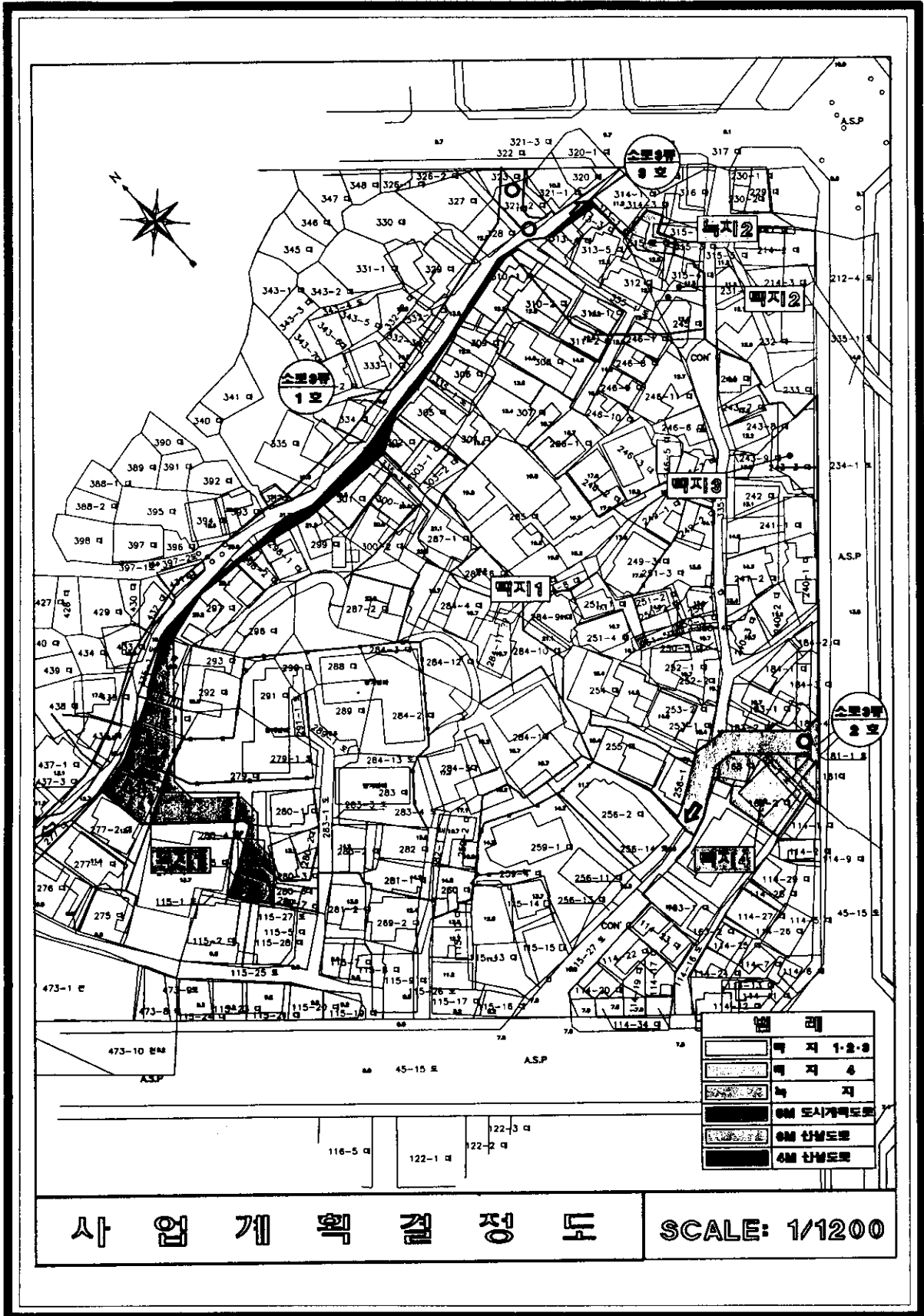
지 적 도 SCALE: 1/1200





사업 계획 결정도

SCALE: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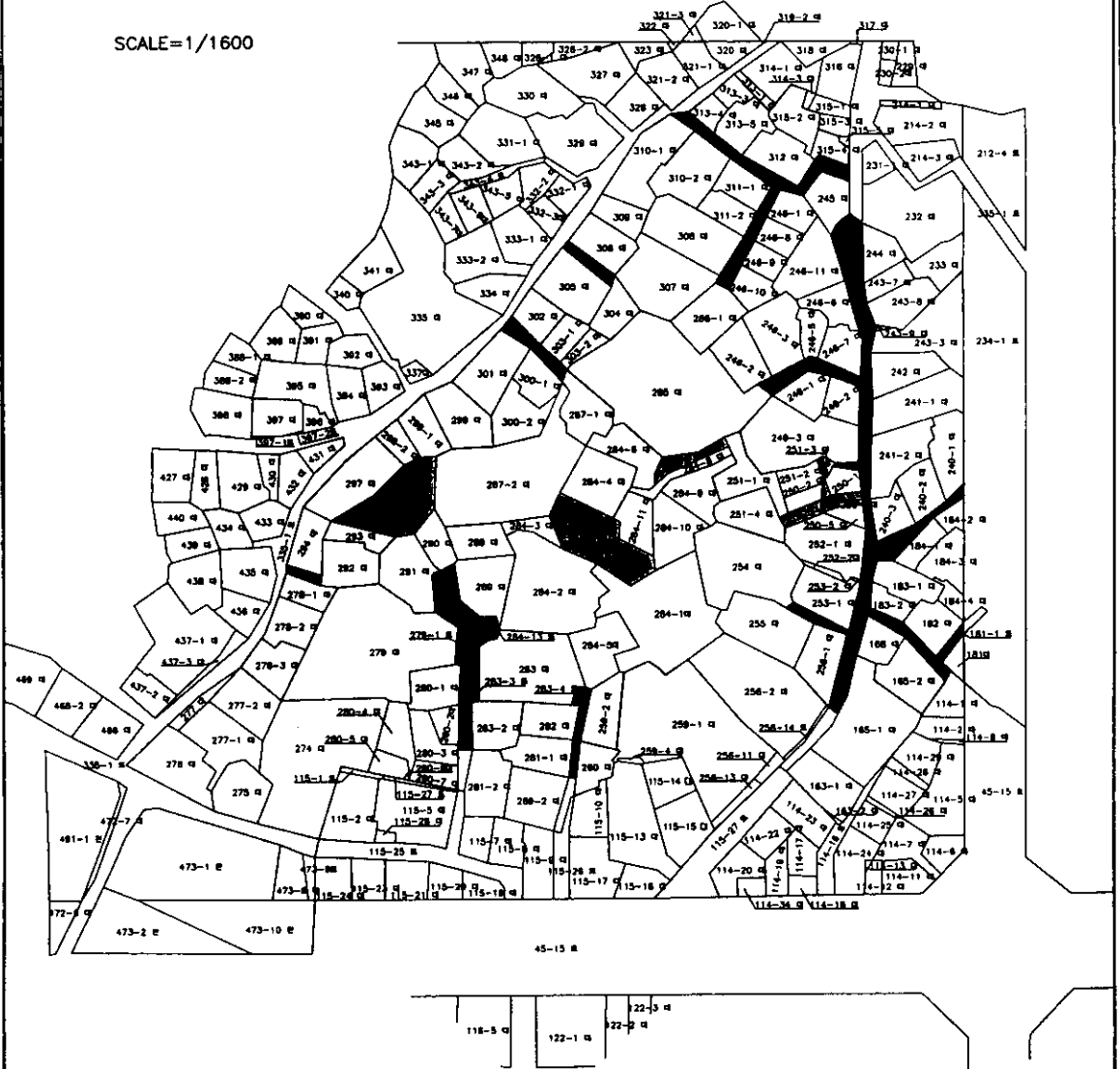


사업 계획 결정도

SCALE: 1/1200



SCALE=1/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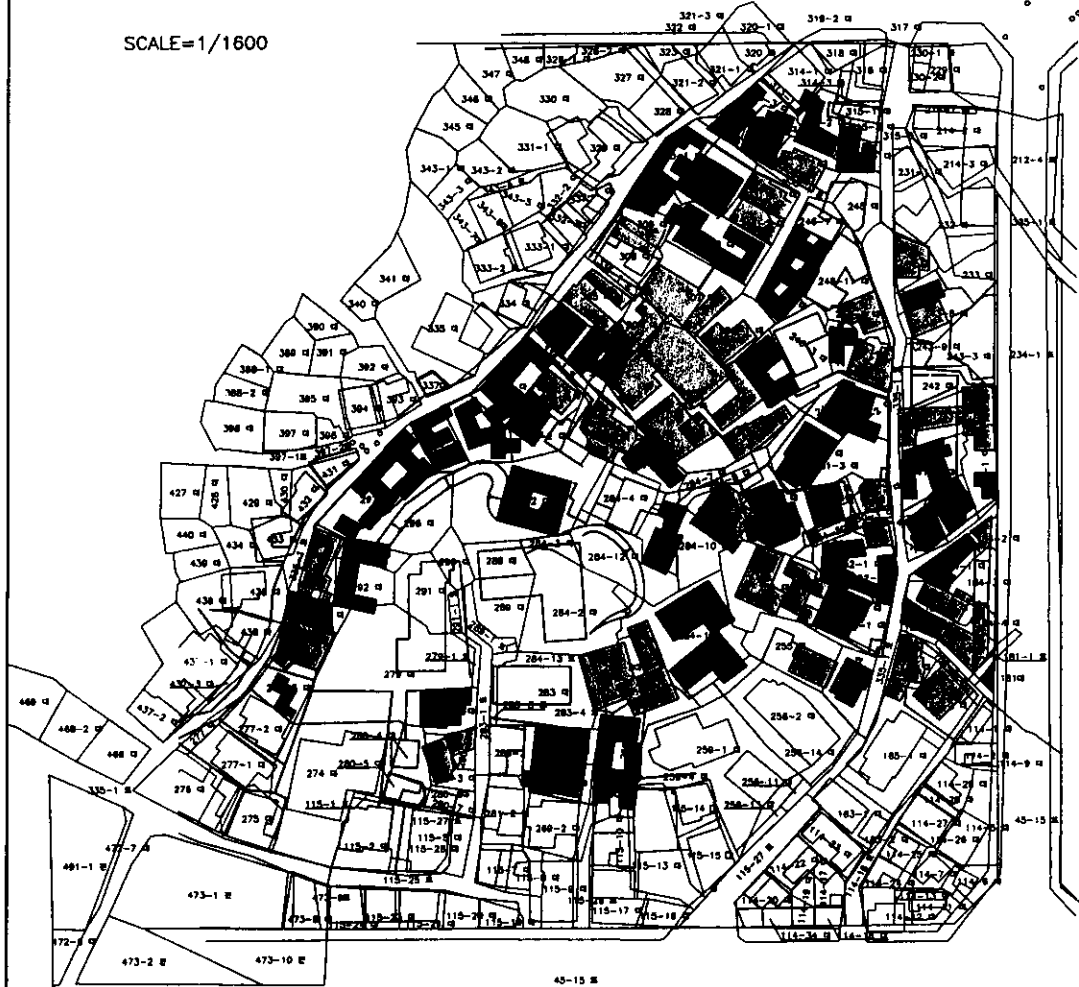


법		례	
	간	부	지
	나	대	지
	도	로	로

토 지 이 용 연 황



SCALE=1/1600



범	목
[White box]	10 년 미만
[Light gray box]	10 ~ 19 년
[Medium gray box]	20 ~ 29 년
[Dark gray box]	30 ~ 39 년
[Black box]	40 년 이상

건물 경과 년 수 별 현황

건 설 계 요

사 업 명	용강 제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대 지 위치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285 번지 일대				
지 역 지구	일반주거지역				
단 지 면 적	구역면적	19,790.00 M2 (5,986.45 PY)			
	실시용지면적	18,418.00 M2 (5,571.45 PY)			
	도로계획 면적	562.00 M2 (170.00 PY)			
	녹지면적	810.00 M2 (245.02 PY)			
	상가부지	192.00 M2 (58.08 PY)			
	통교부지	365.00 M2 (110.41 PY)			
개발가능용적률 산출식	$\text{공공시설 확보 부지율} = \frac{\text{공공시설 확보 부지면적 (562 + 810 = 1,372)}}{\text{총 개발 대지 면적 (19,790.00)}} \times 100 = 6.9328\%$ $\text{개발 가능 용적률} = \frac{\text{계획 용적률 (200.00)}}{<100 - \text{공공시설확보부지율 (6.9328)}>} \times 100 = 214.90\%$				
항 목 구분	전 체	조심 및 일반면적	임대면적	상 가	비 고
실시용지면적	18,053.00 M2 (5,461.00 PY)	16,916.00 M2 (5,517.07 PY)	1,008.00 M2 (304.92 PY)	129.00 M2 (58.08 PY)	
도로계획 면적	562.00 M2 (170.00 PY)	541.70 M2 (163.86 PY)	20.30 M2 (6.14 PY)	-	
녹지면적	810.00 M2 (245.02 PY)	727.00 M2 (219.92 PY)	83.00 M2 (25.10 PY)	-	
건축 면적	5,113.00 M2 (1,546.68 PY)	4,900.89 M2 (1,482.51 PY)	212.11 M2 (64.16 PY)	90.00 M2 (27.22 PY)	
면 적	53,150.61 M2 (16,078.00 PY)	49,801.44 M2 (15,064.86 PY)	3,079.17 M2 (931.44 PY)	270.00 M2 (81.67 PY)	
지상층 면적	38,419.53 M2 (11,621.86 PY)	36,350.36 M2 (10,995.93 PY)	1,889.17 M2 (571.47 PY)	180.00 M2 (54.45 PY)	
지하층 면적	14,731.08 M2 (4,416.13 PY)	13,451.08 M2 (4,068.93 PY)	1,190.00 M2 (359.97 PY)	90.00 M2 (27.22 PY)	
건 물 율	-	28.97 %	21.04 %	46.88 %	서울시 기본계획 용적률
개발용적률	-	214.89 %	192.95 %	93.75 %	: 200% 이상지역
세 대 수	392 세대	351 세대	41 세대	-	
구 조	지하2층, 지상6 ~ 15층 이면	지하2층, 지상6 ~ 15층 이면	지하2층, 지상9 ~ 11층 이면	지하1층 ~ 지상1층	
주 차 시설	설계: 428 대 (현상: 414 대)	설계: 395 대 (현상: 385 대)	설계: 30 대 (현상: 29 대)	설계: 2대 (현상: 2대)	
부 대 라 시 설	노인회, 경안실 관리실	237.75 M2 (71.92 PY)	226.50 M2 (68.51 PY)	11.25 M2 (3.40 PY)	-
	기계, 전기실	330.44 M2 (99.96 PY)	330.44 M2 (99.96 PY)	40.00 M2 (12.60 PY)	-
	지하주차장	13,076.52 M2 (3,955.63 PY)	13,120.64 M2 (3,968.98 PY)	1,150.00 M2 (347.87 PY)	-
비 고					

